

1. 개정이유

시·도지사의 대형·특수 재난대응 및 소방안전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·도지사 직속으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,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민원인 불편해소 및 신속한 현장지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·도 규칙으로 119출장소를 설치하게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의 책임성과 역량을 강화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법령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대규모 재난 및 화학·수난·산악 등 특수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
시·도 조례로 119특수대응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장)
- 나.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위기대처 능력함양 및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
시·도 조례로 소방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장)
- 다.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민원인 불편해소 및 신속한 현장
지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·도 규칙으로 119출장소를 설치할 수
있도록 함(안 제8조, 별표1, 별표2)
- 라.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배치를 위해 소방서장이 설치하는 119지역대를
시·도 규칙으로 설치하고 지역대장을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, 별표1)
- 마. 시·도에서 소방기관 설치 시 소방청장과 협의하도록 함(안 제1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6 ~ 7월, 예정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과 및 팀”을 “과·단 및 담당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과장 및 팀장”을 “과장·단장 및 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119안전센터 등)”을 “(119출장소·119안전센터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119안전센터·119구조대·119구급대·119구조구급센터 및 소방정대(消防艇隊)”를 “119출장소·119안전센터·119구조대·119구급대·119구조구급센터·소방정대(消防艇隊) 및 119지역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119안전센터장·119구조대장·119구급대장·119구조구급센터장 및 소방정대장”을 “119출장소장·119안전센터장·119구조대장·119구급대장·119구조구급센터장·소방정대장 및 119지역대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119안전센터 및 소방정대”를 “119출장소·119안전센터·소방정대 및 119지역대”로 한다.

제9조를 삭제한다.

제4장(제11조부터 제14조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장 119특수대응단 등

제11조(설치 등) 시·도는 화재, 재난·재해 및 테러,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·도의 조례로 직할 구조대·테러대응구조대·119항공대 및 특수구조대로 구성된 119특수대응단(이하 ‘대응단’이라 한다.)을 설치 할 수 있다

제12조(단장) ① 대응단에 단장 1명을 두며, 단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.

② 단장은 시·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13조(하부조직) ① 대응단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·팀을 둔다.

② 과장·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.

③ 대응단의 과·팀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의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4조(직할구조대 등) ① 대응단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·도의 규칙으로 대응단장 소속으로 직할구조대·테러대응구조대·119항공대 및 특수구조대를 둘 수 있다.

② 직할구조대장·테러대응구조대장·119항공대장 및 특수구조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.

제5장(제15조부터 제18조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장 소방체험관

제15조(설치 등) 시·도는 화재, 구조, 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위
기대처 능력을 함양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·도의 조례
로 소방체험관(이하 ‘체험관’이라 한다.)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16조(관장) ① 체험관에 관장 1명을 두며, 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
다.

② 관장은 시·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
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17조(하부조직) ① 체험관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 및 팀을
둔다.

② 과장·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.

③ 체험관의 과·팀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
항은 해당 시·도의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8조 (소방기관 설치 협의) 시·도는 이 영에서 규정한 소방기관을 설
치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
한다. 다만 대통령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하는 기준인건비
에 반영된 인력을 확보한 소방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별표 1의 제목 중 “제3조·제4조·제6조·제7조 및 제8조”를 “제3조·
제4조·제6조·제7조·제8조·제12조·제13조·제14조·제16조·제17
조”로 하고, 같은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	직 급
소방학교장	특별시, 경기도	소방준감
	광역시, 그 밖의 도	소방정
소방학교의 부장·과장·팀장·연구실장		소방정 또는 소방령
소방서장		소방정
소방서의 과장·단장·담당관		소방령
소방체험관장		소방정
소방체험관의 과장·팀장		소방령
119특수대응단장		소방정
119특수대응단의 과장·팀장		소방령
직할구조대장·태러대응구조대장, 119항공대장 및 특수구조대장		소방령
119출장소장		소방령
119안전센터장·119구조대장·119구급대장 · 119구조구급센터장·소방정대장		소방경 또는 소방위
119지역대장		소방위

별표 2의 제목 중 “소방서·119안전센터 등의 설치기준”을 “소방서·119출장소·119안전센터 등의 설치기준”으로 한다.

별표 2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, 같은 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119출장소의 설치기준

가. 1. 소방서의 설치기준 가목 단서에 따라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·군·구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.

나. 1. 소방서의 설치기준 나목·다목 및 가목에도 불구하고 소방서관할지역에 석유화학단지·공업단지·주택단지 또는 문화관광단지의 개발 등으로 대형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 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지방농촌진흥기구·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·자치경찰단·보건환경연구원·보건소·지방소방학교·소방서와”를 “지방농촌진흥기구·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·자치경찰단·보건환경연구원·보건소·지방소방기관과”로 한다.

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중앙소방학교·중앙119구조본부·국립소방연구원·지방소방학교·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”을 “중앙소방학교·중

양119구조본부·국립소방연구원·지방소방학교·서울종합방재센터
·소방서·소방체험관 및 119특수대응단을”로 한다.

제3조제6항 중 “지방소방학교·서울종합방재센터·소방서”를 “지방소방학교·서울종합방재센터·소방서·소방체험관·119특수구조단”으로, “지방소방학교장·서울종합방재센터장 또는 소방서장”을 “지방소방학교장·서울종합방재센터장·소방서장·소방체험관장 및 119특수대응단장”으로 한다.

③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제4호 중 “서울종합방재센터 또는 소방서”를 “서울종합방재센터, 소방서, 소방체험관 및 119특수구조단”으로, “지방소방학교장·서울종합방재센터장 또는 소방서장”을 “지방소방학교장·서울종합방재센터장·소방서장·소방체험관장 및 119특수대응단장”으로 한다.

④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지방소방학교 및 소방서”를 “지방소방학교, 소방서, 소방체험관 및 119특수대응단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서장) ① (생 략) ② 서장은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또는 <u>특별자치도지사</u> 의 명을 받아 소 관 사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 원을 지휘 · 감독한다.	제6조(서장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 · 도 지사”라 한다)</u> ----- -----.
제7조(하부조직) ① 소방서의 업 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<u>과</u> <u>및 팀</u> 을 둔다. ② <u>과장 및 팀장</u> 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. ③ (생 략)	제7조(하부조직) ① ----- ----- <u>과</u> <u>· 단 및 담당관</u> ----- -----. ② <u>과장 · 단장 및 담당관</u>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
제8조(<u>119안전센터 등</u>) ① 소방서 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 기 위하여 해당 시 · 도의 규칙 으로 소방서장 소속으로 <u>119안 전센터 · 119구조대 · 119구급대 · 119구조구급센터 및 소방정 대(消防艇隊)</u> 를 둘 수 있다. ② <u>119안전센터장 · 119구조대 장 · 119구급대장 · 119구조구급 센터장 및 소방정대장</u> 의 직급은	제8조(<u>119출장소 · 119안전센터 등</u>) ① ----- ----- ----- <u>119출장 소 · 119안전센터 · 119구조대 · 119구급대 · 119구조구급센터 · 소방정대(消防艇隊) 및 119지역 대</u> -----. ② <u>119출장소장 · 119안전센터 장 · 119구조대장 · 119구급대장 · 119구조구급센터장 · 소방정</u>

별표 1과 같다.

③ 제1항에 따라 119안전센터
및 소방정대를 설치하는 기준은
별표 2와 같다.

제9조(119지역대) ① 소방서장은
해당 소방서의 인력 및 장비 등
을 고려하여 119지역대를 설치
·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119지역대를
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
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대장 및 119지역대장-----
-----.

③ ----- 119출장소 · 11
9안전센터 · 소방정대 및 119지
역대-----.

<삭 제>

제4장 119특수대응단 등

제11조(설치 등) 시 · 도는 화재,
재난 · 재해 및 테러 , 그 밖의
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
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 · 도
의 조례로 직할구조대 · 테러대
응구조대 · 119항공대 및 특수
구조대로 구성된 119특수대응
단(이하 ‘대응단’이라 한다.)을
설치 할 수 있다

제12조(단장) ① 대응단에 단장 1
명을 두며, 단장의 직급은 별표
1과 같다.

② 단장은 시 · 도지사의 명을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13조(하부조직) ① 대응단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·팀을 둔다.

② 과장·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.

③ 대응단의 과·팀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의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4조(직할구조대 등) ① 대응단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·도의 규칙으로 대응단장 소속으로 직할구조대·테러대응구조대·119항공대 및 특수구조대를 둘 수 있다.

② 직할구조대장·테러대응구조대장·119항공대장 및 특수구조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.

제5장 소방체험관

제15조(설치 등) 시·도는 화재, 구조, 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위기대처 능력을 함양하고

<신 설>

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
· 도의 조례로 소방체험관(이하
‘체험관’이라 한다.)을 설치할
수 있다.

제16조(관장) ① 체험관에 관장 1
명을 두며, 관장의 직급은 별표
1과 같다.

② 관장은 시·도지사의 명을
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, 소
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<신 설>

제17조(하부조직) ① 체험관의 업
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
및 팀을 둔다.

② 과장·팀장의 직급은 별표 1
과 같다.

③ 체험관의 과·팀과 그 하부
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
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의 규
칙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18조 (소방기관 설치 협의) 시
· 도는 이 영에서 규정한 소방
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방청
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
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 대
통령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
이 산정하는 기준인건비에 반영

된 인력을 확보한 소방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